

#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862
----------	------

발의년월일 : 2009. 6. 10.  
발 의 자 : 김명연 의원 외 6인

## □ 제안이유

- 초·중·고생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신체적 건강, 문화예술 정신의 함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안산교육청에서 주최·주관하는 체육 행사 및 교육활동에 대하여 국민생활관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조문의 개선과 조직폐지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국민생활관의 시설을 실제 현황에 맞게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의 내용을 변경하고, “수급자”에 대한 정의를 추가로 규정함(안 제2조).
- 국민생활관 사용허가에 대한 조문을 사용신청 및 허가로 변경하고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면 시장은 사용허가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문구를 간결하게 변경함(안 제5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조행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로 변경함(안 제6조).
- 조문의 잘못된 용어를 올바른 용어로 변경함(안 제7조, 제8조, 제10조).
- 사용료 감면 대상에 교육청에서 주최(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 관련 행사를 추가하고 감면비율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명시함(안 제12조).
- 이용(관람)료의 반환 규정은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이용(관람)개시일 이전은 전액 반환하고, 이용(관람)개시일 이후는 일할 계산하여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정함(안 제13조).
- 조직 폐지에 따라 관장을 시장으로 변경하고, 올바른 용어를 사용함(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개정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하 “국민생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생활관의 시설”이라 함은 기본시설(수영장, 체육관, 공연장, 전시실 등)과 부대시설(조명, 음향시설, 전광판 등)을 말한다.
2. “국민생활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중계방송,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공연, 전시, 전람 및 그 밖에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5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용사용자”라 함은 국민생활관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 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단체사용 또는 입장”이라 함은 단체 구성원이 30인 이상이고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사용 또는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6. “개인사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30인 미만의 자를, “개인사용료”라 함은 개인사용자가 납부한 요금을 말한다.
7. “관람자”라 함은 각종 경기 및 행사 등을 관람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어린이”이라 함은 초등학생과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9. “청소년”이라 함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과 13세이상 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10. “군인”이라 함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이나 전투경찰을 말한다.
11. “성인”이라 함은 19세 이상의 자중에서 학생, 군인, 노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12.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13.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4. “수급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수급자(의료, 자활, 교육특례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설의 개방) ①국민생활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방하여야 한다.  
②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 주부교실, 취미교실, 청소년 및 유아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범위 및 이용방법
- ③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자재와 체육지도자 및 전문인 등을 배치할 수 있다.
- ④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개방제한)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민생활관 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국민생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국민생활관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신청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그 사유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이를 대신한다.
-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국민생활관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체력증진 및 문화창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5. 기타행사

-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국민생활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국민생활관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4.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생활관 입장을 거절 또는 퇴장시킬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2. 전염성 질병이 있는 자
3. 술에 만취한 자
4.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위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5. 국민생활관내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
6. 그 밖에 입장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제9조(사용시간) 국민생활관의 일일 사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개방시간
주 간	06:00 ~ 18:00
야 간	18:00 ~ 22:00

제10조(사용료) ① 국민생활관시설의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단체사용료, 개인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 방송료, 상업사용료 등으로 구분한다.

③ 단체 및 개인사용료는 월 회원료와 1일 사용료로 구분한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전용사용자가 유료관람권을 발행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는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은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다만,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하여 환산한 사용료가 제10조의 별표 1에 의한 전용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2. 안산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주최(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 관련 행사

- 3.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 4.수급자, 어린이, 노인, 군인, 장애인
  - 5.경기도 및 안산시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청이나 시체육회가 인정하는 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1.전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사용료의 5할 반환. 다만, 최초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는 전액을 반환
  - 2.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지정된 기간만큼 연장 할 수 없을 때 전액반환
  - 3.천재지변과 시설보수 등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전액반환
- ② 단체 또는 개인이 국민생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관람)하고자 이 조례에서 정한 요금을 납부한 후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요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 1.이용(관람)개시일 이전 : 전액 반환
  - 2.이용(관람)개시일 이후 : 일할 계산하여 남은 잔액 반환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1.사용허가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조건을 위반할 때
  - 2.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3.시설의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운때
-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할 때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6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7조(손해 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손괴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8조(시설의 관리)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배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국민생활관 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각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생활관 관리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0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국민생활관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 예매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등은 최초사용일 5일전까지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위탁관리)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물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위탁관리의 취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수탁협약을 위반할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23조(수탁자의 부대설비)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철거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사용목적 및 행 사 개 요	목 적			
	행사내용			
사용시설 및 부 대 설 비	시 설 명			
	부대설비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 월 일 시 까지			
사용료 구분	전액납부 :	원정	감면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안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사용 허가서				
신청자	주 소		전 화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사용허가 내 용	사용 목적			
	사용 기간			
	시 설 명			
	부대시설명			
사 용 료	금 액	계	시설사용료	부대설비 사용료
	납 부			
허가조건	이면과 같음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함.				
월                   일				
신청자		(인)		
안 산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사용 허가서(제5조제2항 관련)

(앞면 생략)

### 허가 조건

1. 실내체육관에서는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한 후 입장하여야 합니다.
2.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내에서 행사시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1회용 도시락 등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합니다.
3. 행사중 발생된 쓰레기는 사용자가 반드시 수거(처리)하여야 합니다.
4. 사용기간중 시설물 및 기물이 오손 또는 파손될 때에는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5. 경기장내에서는 임의로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한 모든 기기는 사용 후 원상태로 가져다 놓아야 합니다.
6. 허가를 받은 자는 불상사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7. 사용자가 임의로 설치한 각종시설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시장이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8. 사용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나 그에 준하는 공공의 행사로 인하여 당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9. 공연장 및 체육관내에서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시면 아니 됩니다.
10.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물품판매 등의 상행위나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별표 1]

## 국민생활관 사용료 징수 요율표(제10조 관련)

### ○ 전용사용료

(단위 :원)

구 분	사용목적	단 위	요 금		비 고
			평 일	토 · 공휴일	
체 육 관	체육경기	1회 (4시간이내)	39,000	52,000	
	체육경기 이 외	1회 (4시간이내)	117,000	156,000	
공 연 장	공연, 발표 교육행사	1회 (4시간이내)	30,000	45,000	
회 의 실	발표, 교육 행 사	m <sup>2</sup> 당/일	100	150	
작품전시관	전 시	m <sup>2</sup> 당/일	100	150	
예 식 장	결 혼 식	1회 (4시간이내)	30,000	50,000	야외예식장은 무료
식 당	피로연, 생일잔치, 발 표, 교육행사	1회 (4시간이내) 일부사용	20,000		전부사용은 주방시설 사용이 포함됨
		1회 (4시간이내) 전부사용	60,000		

○ 방 송 費

(단위 : 원)

종 류	구 分	중 계 방 송 費		비 고
		T · V	라 디 오	
프로 경기	국 내	10,000	5,000	
	국 제	30,000	10,000	
체육이외행사	국 내	30,000	15,000	
	국 제	30,000	15,000	
녹화 또는 녹음	공 통	생방송 중계료의 반액	생방송 중계료의 반액	
경기 또는 행사 촬영	공 통	TV의 생방송료와 동일	라디오 생방송료와 동일	

○ 상업사용료(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사용료)

(단위 : 원)

구 分	금 액			비 고
1.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한 영화촬영 시	<input type="radio"/> 주 간 : 20,000 <input type="radio"/> 야 간 : 40,000			
2.애드벌룬 및 이와 유사한 선전광고 행위	<input type="radio"/> 1개 1일간 4,000 (단, 일출시부터 일몰까지)			
3.팸플릿 판매행위	<input type="radio"/> 총 판매금액의 20/100 징수			
4.기 타 (선전, 광고, 게시 등)	규 격	기 간	기 념 관	
	대형(20m이상)	· 1년간 동일 · 행사기간	100,000 30,000	
	중형(10m이상 ~20m미만)	· 1년간 동일 · 행사기간	70,000 20,000	
	소형(10m미만)	· 1년간 동일 · 행사기간	50,000 10,000	

○ 단체 및 개인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사용일	어린이	청소년 · 군인	성인	노인	비고
수영장	(개인) 1월 1일	30,000 1,700	40,000 2,000	48,000 2,500	30,000 1,700	· 월 이용료는 지도자 수강료 포함
	(단체) 1월 1일	23,000 1,400	28,000 1,500	35,000 1,900	23,000 1,400	· 단체는 30인 이상을 기준 으로 함
	1월 1일	- -	26,000 2,000	26,000 2,000	20,000 1,400	
	코트 이용료 (2시간)			5,000		
테니스장	레슨비 (1월)			80,000		

\*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주관하는 체육·문화·청소년 프로그램 등의 수강료는 교육종목 등에 따라 별도로 산정한다.

\* 관련법에 따른 세금 및 기금은 별도임.

\*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수영장의 경우 13세이상 55세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 이용료에 한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단위	사용료	비고
무대조명	시간당	20,000	· 1회란 4시간 이내를 말함
음향시설	음향	1회	20,000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녹음		
	릴	1회	30,000 · 무대장치 작업 및 연습조명
	카세트테이프	1회	20,000 사용료는 50%감면
	야외앰프	1회	10,000
영사기 (35m/m)	시간당	20,000	· 영화상영만을 위한 대관시 영사기료 면제
피아노	그랜드	1회	20,000
	일반	1회	10,000
난방	시간당	40,000	· 음향 사용 시 기본제공 마이크수를 4대로 하고, 추가시 1대당 5,000원 부과
냉방	시간당	20,000	
전광판	시간당	5,000	
드레스	1회	50,000	

[별표 2]

○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액(제11조 관련)

구 분	사 용 료 징 수
프로경기	매출총액의 2 할
영화상영	매출총액의 2.5 할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시설의 개방) 생략	제3조(시설의 개방) (현행과 같음)
제4조(개방제한) 생략	제4조(개방제한) (현행과 같음)
<p>제5조(사용허가) ①국민생활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서식의 국민생활관 사용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7일전에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사유를 5일전에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이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p> <p>③관장은 제2항이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국민생활관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국민생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국민생활관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신청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그 사유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이를 대신한다.</p> <p>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국민생활관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③삭제</p>

현행	개정안
<p>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u>관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u></p> <p>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조행사</p> <p>2.(생략)</p> <p>3.<u>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u></p> <p>4.~5.(생략)</p>	<p>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u>시장....</u> ..... ..... .....</p> <p>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p> <p>2.(현행과 같음)</p> <p>3.<u>각급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u> .....</p> <p>4.~5.(현행과 같음)</p>
<p>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국민생활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p> <p>1.~4.(생략)</p> <p>5. <u>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u></p>	<p>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국민생활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p> <p>1.~4.(현행과 같음)</p> <p>5.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u></p>
<p>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생활관 입장을 거절 또는 퇴장시킬 수 있다.</p> <p>1.~5.(생략)</p> <p>6. <u>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u></p>	<p>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생활관 입장을 거절 또는 퇴장시킬 수 있다.</p> <p>1.~5.(현행과 같음)</p> <p>6. <u>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u></p>
<p>제9조(사용시간) (생략)</p> <p>10조(사용료) ①(생략)</p> <p>②제1항에 <u>의한</u>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단체사용료, 개인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 방송료, 상업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p> <p>③단체 및 개인사용료는 월 회원료와 1일 사용료로 구분하여 정한다.</p>	<p>제9조(사용시간) (현행과 같음)</p> <p>10조(사용료) ①(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에 <u>따른</u>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단체사용료, 개인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 방송료, 상업사용료 등으로 구분한다.</p> <p>③단체 및 개인사용료는 월 회원료와 1일 사용료로 구분한다.</p>

현행	개정안
<p>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p> <p>① 전용사용자가 유료관람권을 발행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는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은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다만,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하여 환산한 사용료가 제10조의 별표 1에 의한 전용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한다. &lt;개정 1998.5.25&gt;</p> <p>&lt;단서개정 2002.12.31&gt;</p> <p>② &lt;삭제 2002.12.31&gt;</p>	<p>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p> <p>전용사용자가 유료관람권을 발행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는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은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다만,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하여 환산한 사용료가 제10조의 별표 1에 의한 전용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한다.</p>
<p>제12조 &lt;삭제 '99. 07.24&gt;</p> <p>제13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조행사</li> <li>2. 안산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주관으로 실시하는 교육 관련 행사(별표 1의 전용 사용료에 한한다)</li> <li>3. (생략)</li> <li>4. 불우청소년,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노인, 군인, 장애인</li> <li>5. (생략)</li> <li>6.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수영장의 경우 13세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 이용료에 한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li> <li>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li> </ol> <p>&lt;신설&gt;</p>	<p>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li> <li>2. 안산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주최(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 관련 행사</li> <li>3. (현행과 같음)</li> <li>4. 수급자, 어린이, 노인, 군인, 장애인</li> <li>5. (현행과 같음)</li> <li>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li> </ol> <p>&lt;삭제&gt;</p> <p>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p>

현행	개정안
<u>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생략)</u> ②(생략)  1. 이용 개시일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에 는 납부한 요금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환급한다.  2. 이용 개시일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에는 납부한 요금의 10퍼센트 및 취 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요 금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통적으로 공제하는 '납부한 요금의 10퍼센트'는 제10조 별표 1에 의한 1일 또는 1월단위 이용요금을 기준으 로 한다.	<u>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현행과 같음)</u> ②(현행과 같음)  1. 이용(관람)개시일 이전 : 전액반환  2. 이용(관람)개시일 이후 : 일할 계 산하여 남은 잔액 반환
	<b>&lt;삭제&gt;</b>
<u>제15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관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3.(생략)</u>  ②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 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 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관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u>제1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시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u>  1.~3.(현행과 같음)  ②..... ..... ..... 시장은 ..... .....
<u>제16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사용자 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 할 때에는 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u>  ②(생략)  ③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할 때는 관장 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 자로부터 징수한다.	<u>제15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 ..... 시장..... ..... ②(현행과 같음). ③..... ..... ..... 시장..... ..... .....</u>
<u>제17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 여 전용허가를 받은자가 관장의 동의 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u>	<u>제16조(양도의 금지) ..... ..... 시장의 .... ..... .....</u>

현행	개정안
<u>제18조(손해배상) (생략)</u>	<u>제17조(손해배상) (현행과 같음)</u>
<u>제19조(시설의 관리) (생략)</u>	<u>제18조(시설의 관리) (현행과 같음)</u>
<u>제20조(국민생활관 관리운영위원회) (생략)</u>	<u>제19조(국민생활관 관리운영위원회) (현행과 같음)</u>
<u>제21조(매표 및 검인) ①(생략)</u> ②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등은 최초사용일 5일전까지 <u>관장의</u> 검인을 받아야 한다.	<u>제20조(매표 및 검인) ①(현행과 같음)</u> ②..... ..... .... <u>시장의</u> ....
<u>제22조(위탁관리) (생략)</u>	<u>제21조(위탁관리) (현행과 같음)</u>
<u>제23조(위탁관리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u>  1.~2.(생략) 3. <u>기타</u>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u>제22조(위탁관리의 취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u>  1.~2.(생략) 3. <u>그 밖에</u>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u>제24조(수탁자의 부대설비) 수탁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는 <u>관장의</u> 사전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철거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u>	<u>제23조(수탁자의 부대설비) .....</u> ..... ..... <u>시장의</u> ..... ..... ....
<u>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u>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현행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4">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사용허가 신청서</th> </tr> <tr> <th>신청자</th> <th>주 소</th> <th>전 화 번 호</th> <th></th> </tr> </thead> <tbody> <tr> <td></td> <td>성 명</td> <td colspan="2">주민등록번호</td> </tr> <tr> <td>사용목적 및 행사 개요</td> <td>목 적</td> <td colspan="2"></td> </tr> <tr> <td>사용시설 및 부 대 설 비</td> <td>시 설 명</td> <td colspan="2"></td> </tr> <tr> <td>사 용 기 간</td> <td>년 월 일 시 ~ 월 일 시 까지</td> <td colspan="2"></td> </tr> <tr> <td>사용료 구분</td> <td>전액납부 : 원정</td> <td>감면</td> <td></td> </tr> </tbody> </table> <p>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신청자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귀하</p>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자	주 소	전 화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용목적 및 행사 개요	목 적			사용시설 및 부 대 설 비	시 설 명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 월 일 시 까지			사용료 구분	전액납부 : 원정	감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자	주 소	전 화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용목적 및 행사 개요	목 적																																		
사용시설 및 부 대 설 비	시 설 명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 월 일 시 까지																																		
사용료 구분	전액납부 : 원정	감면																																	
<별지 제1호서식>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4">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사용허가 신청서</th> </tr> <tr> <th>신청자</th> <th>주 소</th> <th>전 화 번 호</th> <th></th> </tr> </thead> <tbody> <tr> <td></td> <td>성 명</td> <td colspan="2">생년월일</td> </tr> <tr> <td>사용목적 및 행사 개요</td> <td>목 적</td> <td colspan="2"></td> </tr> <tr> <td>사용시설 및 부 대 설 비</td> <td>시 설 명</td> <td colspan="2"></td> </tr> <tr> <td>사 용 기 간</td> <td>년 월 일 시 ~ 월 일 시 까지</td> <td colspan="2"></td> </tr> <tr> <td>사용료 구분</td> <td>전액납부 : 원정</td> <td>감면</td> <td></td> </tr> </tbody> </table> <p>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신청자 (인)</p> <p style="text-align: center;"><u>안산시장</u> 귀하</p>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자	주 소	전 화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사용목적 및 행사 개요	목 적			사용시설 및 부 대 설 비	시 설 명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 월 일 시 까지			사용료 구분	전액납부 : 원정	감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자	주 소	전 화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사용목적 및 행사 개요	목 적																																		
사용시설 및 부 대 설 비	시 설 명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 월 일 시 까지																																		
사용료 구분	전액납부 : 원정	감면																																	

현행				개정안			
<b>&lt;별지 제2호서식&gt;</b>				<b>&lt;별지 제2호서식&gt;</b>			
<b>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사용 허가서</b>							
신청자  내용 내용	주 소	전화 번 호			주 소	전화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사용 목적				사용 목적		
	사용 기간				사용 기간		
	시 설 명				시 설 명		
사용료  내용 내용	부대시설명				부대시설명		
	금 액	계	시설사용료	부대설비사용료	금 액	계	시설사용료
	납 부				납 부		
허가조건 이면과 같음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함							
월 일 신청자 (인)				월 일 신청자 (인)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현행	개정안
<b>허가 조건</b>	<b>허가 조건</b>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5. 경기장내에서는 임의로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에는 <u>관장의</u>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한 모든 기기는 사용후 원상태로 가져다 놓아야 합니다.	5..... ..... <u>시장의</u> ..... ..... .....
6.(생략)	6.(현행과 같음)
7. 사용자가 임의로 설치한 각종시설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u>관장이</u>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 ..... <u>시장이</u> .....
8.~10.(생략)	8.~10. (현행과 같음)
<b>[별표 1] 국민생활관 사용료 징수 요율표</b>	
<input type="radio"/> 전용사용료(생략)	<input type="radio"/> 전용사용료(현행과 같음)
<input type="radio"/> 방송료(생략)	<input type="radio"/> 방송료(현행과 같음)
<input type="radio"/> 상업사용료(생략)	<input type="radio"/> 상업사용료(현행과 같음)
<input type="radio"/> 단체 및 개인사용료(생략) ※ (생략)	<input type="radio"/> 단체 및 개인사용료(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생략)	※ (현행과 같음)
<b>&lt;신설&gt;</b>	<b>※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수영장의 경우 13세이상 55세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 이용료에 한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할수 있다.</b>
<input type="radio"/> 부대시설 사용료(생략)	<input type="radio"/> 부대시설 사용료(현행과 같음)